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반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수령한 수당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이의 반환을 위한 행정처분 통보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22.

경기도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이O호)
- 2. 근 거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O호	64.12.19	경기도 오산시 가수1로 13 (이하 주소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이O호)	취업활동계획 수립 당일인 2026.04.30.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신규 창업한 사실 확인	○ 1회차,2회차,3회차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 ○ 금액: 총 1,800,000원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9.22.~2026.10.6.(15일간)
- 5. 기타사항은 경기도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현선(Tel. 031-8024-9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